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임만균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2999호

다.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 안 이 유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들을 우대하고, 경로자 우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 요 내 용

-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의사상자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 등을 우대하고, 영유아, 경로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이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조례 개정의 형식적 타당성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0조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²⁾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바, 서울시는 동 조례 제15조제1항과 별표 1, 2에 금액 및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³⁾.
- 동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는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원 내 ‘입장료’에 한하고 ‘공원시설 사용료(이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21조(준용)에서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를 준용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1.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2. 그 밖에 공원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해당하는 공원의 입장료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는 [붙임] 참조

4) 제21조(준용)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반면, 동 조례 제15조에 따른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의 비고란에는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조례 내 규정이 일관적이지 않아 체계에 맞게 감면 대상을 규정(안 제20조제3항 신설)하여 정비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보훈 관련 법령 검토

- 대한민국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우대하는 보훈 정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예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67조⁵⁾와 동 법 시행령 제86조⁶⁾에는 감면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정하고 있고 그 밖의 보훈관계 법령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붙임2 참조),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도 ‘공원(시설) 입장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관련 법령> (안 제20조제3항 중)

구분	관련 법령(약칭)	소관부처	공원 입장료 감면여부
보훈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국가보훈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국가보훈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국가보훈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국가보훈부	○
기타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보건복지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국방부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6)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 ‘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이용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보존 관련 법령에서는 이용료 감면 시설로 고궁, 공원, 기념관, 박물관, 수목원, 공공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료 감면 시설’의 의미는 공원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공원·고궁·수목원’ 등의 그 자체 시설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면제되는 이용료는 ‘그 자체 시설(공원)의 입장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제처 법령해석례⁷⁾에서 제시된 바 있음.

법제처 14-0366 해석례, 2014. 8. 26.

...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 10에서는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제5호), 국공립 수목원(제6호), 국공립 자연휴양림(제7호),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함, 제8호),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제9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위 별표 10에 **열거된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 위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로서의 **국공립 공원이란 국공립 공원에 설치된 “공원시설”이 아닌 국공립 공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면제되는 국공립 공원의 이용료는 **국공립 공원의 입장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연공원법」에서 그 징수를 허용하고 있는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동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국공립 공원) 등에 대하여 ‘공원(시설) 입장료’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을 적용해 온 것으로 파악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7) 법령해석례, 법제처 14-0366호(2014. 8. 26.), 국가보훈부

- 동 조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조⁸⁾ 및 별표 1에서는 공원 내 시설을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⁹⁾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한 감면이 허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운동시설의 경우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로 정의되어 있는바, 이는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¹⁰⁾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서울시¹¹⁾ 및 문화체육관광부¹²⁾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공원 내 체육(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안내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감면(50%) 사항을 준용하여 ‘공원 내 운동(체육)시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 분	체 육 시 설 종 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8)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1.조경시설, 2.휴양시설, 3.유흥시설, 4.운동시설, 5.교양시설, 6.편익시설, 7.공원관리시설, 8.도시농업시설, 9. 그 밖의 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1)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현황(202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2023년말 기준)

12) 2024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2023년말 기준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위임 조례 검토

- 「체육시설법」 제2장(공공체육시설) 제5조제3항¹³⁾ 및 제6조¹⁴⁾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4조의2¹⁵⁾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체육시설조례”)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0조)¹⁶⁾하고 제1호(개인

13)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4)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5)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1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0분의 50 감액

연습사용료) 가목에서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례 제2조(설치)에 따라 적용범위를 체육정책과 소관인 특정 시설¹⁷⁾로만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위임 사항과 “체육시설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특정 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원 내 체육(운동)시설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자’, ‘유공자’ 등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본 조례안은 서울시 체육시설 운영의 일관된 정책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감면 대상자와 관련하여 ‘6세 미만’(영유아) 및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등은 「체육시설법」 제6조(노인·장애인) 및 “체육시설조례” 등 통상 법령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¹⁸⁾¹⁹⁾을 준용한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도시공원의 역할인 시민의 건강 증진²⁰⁾과 건전한 여가 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강·복지 도시를 추구²¹⁾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00분의 30 감액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17)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대상: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목동야구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산악문화체험센터(※붙임3 참조)

18)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및 제34조(무상보육) 등

19)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생략)

2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정·개선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음.

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 “2024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6.1.1.) 이전에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확보,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개편에 유의해야 할 것임.

또한, 이용료가 낮아져 예약 후 미이용하는 사례나 특정 집단의 독점사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붙임 1> 공원시설 이용료

[별표 2]

공원시설 이용료(제15조제1항 관련)

1. 체육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4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풋살경기장은 청소년 이용시 30% 할인,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156,000	300,000~390,000		
		인조잔디		55,000~82,500	110,000~143,000		
	풋살 경기장	10인용		25,000~32,500			
		6인용		15,000~19,500			
	테니스장	실외	1면당, 2시간당	8,000~16,000			
		실내	1면당, 2시간당	25,000~37,5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6,000 3,000~4,000 2,000~3,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2,000			
국궁장		1일(3시간)	2,000~4,000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 할인 ◦청소년·어린이는 체협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개월	20,000~40,000				
서울대 공원	성인야구장	1일	70,000~91,000	200,000~260,000	◦토, 공휴일은 이용료 30% 가산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42,000~54,600				
	리틀야구장	1일	35,000~46,000	100,000~130,000			
		3시간	21,000~27,300				

2. 휴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야영장 (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30,000	◦입소일(1박2일 기준)이 공휴일이 아닌 월~목요일인 경우 20인(야영장소 5면) 이상 이용시 30% 할인
		글램핑	야영장소 1회당	90,000~120,000	
		캠프시설	개소당 (바비큐존 등)	5,000~20,000	
		전기료	전기 1회당	3,000~5,0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야영텐트 1회당	5,000~20,000	
			1인용매트 1회당	1,000~1,500	
서울대 공원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4,000 1,500~3,000 1,000~2,000	

3. 교양시설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300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200	◦일(8시간) 단위 계산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실내공간에 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적용 -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
	야외무대	2시간당	100,000~150,000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8,000~12,000 5,000~8,000 3,000~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키 140cm 이상

4. 기타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공통	사진·영상 촬영녹화	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	13,000~19,500 6,500~13,000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1일당)	1,000~2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남산 공원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3,000~6,000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 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2,000~4,000	

<붙임 2> 보훈관계 법령

<보훈 관련 법령>

	연번	관련법령	약칭	소관부처
보훈 관계 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부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법	국가보훈부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	국가보훈부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법	국가보훈부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유공자법	국가보훈부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보훈부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국가보훈부
기타 법령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법	보건복지부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송환법	국방부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과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3-1.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2.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4-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5-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6-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6-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7-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7-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8-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8-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사상의 의사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9-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붙임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워밍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구의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힐로 57-30(구의동 164-5)
신월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신월동 149-2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체육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